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 표결 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, 회의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(안 제10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위원회 표결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○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함(안 제10조제4항)

3) 검토 의견

○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가부동수이면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이 당연하고, 위원장에게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